



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규정

제정일	2022. 7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SDS HiVE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, 사업비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구성) ① 위원장은 성남시장과 동서울대학교 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성남시장, 동서울대학교 총장, 신구대학교 총장, 성남시 산업관련부서장, 지역관련 기관 및 산업체 임직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 3조 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② 사업기간 중 위원의 소속기관 보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임기는 만료되고, 후임자가 위원이 된다.

제 4조 (기능) 위원회는 지역 산업여건 및 참여대학 특성, 지역사회 수요분석 등을 토대로 특화분야 선정, 협력체계 구축, 사업 참여 주체 간 의견교환·수렴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 5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인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고, 임시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위원 과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조 (하부조직) ①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SDS HiVE센터를 동서울대학교에 둔다.

② 센터장은 동서울대학교 교직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(성남시, 신구대학교)의 장은 필요한 경우 SDS HiVE센터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④ SDS HiVE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7조 (기타)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관련 법규 및 지침과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